

# 2023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(4차)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제주특별자치도	식품산업과	과 장 유지호	064-710-3170
		팀 장 이현정	064-710-3171
		담당자 김나훈	064-710-3173

## 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5 ~ 12월
  - 사업량 : 4 ~ 5개소 \* 신청상황 및 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  - 사업비 : 458백만원(자체재원 275, 자부담 183)
    - 보조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  - 사업대상 :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\* 식품제조가공업(또는 즉석판매제조업)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   - \* 지원설비가 도입될 공장은 도내에 위치하여야 함.
  - 지원내용
    -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지원
    - 농산물 가공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지원
- ※ 지원제외 : 건축물 신축·개보수 비용,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

## 2 지원자격 및 요건

- 지원자격 : 제주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(또는 즉석판매제조업)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   - 법인(또는 개인사업자)는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일 것
    -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
    -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
    -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\*일 것
- \* 축산물(유가공품,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, 알가공품 등), 양잠, 양봉, 곤충 등 지원제외

## ○ 지원요건

- (법인사업자)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, 자본금 80억 이하 법인
  - 중소기업으로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업체
  -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
  - 농업법인\*의 경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\*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, 농업회사 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/10이상 증빙하여야 하며. 그 밖의 사항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 제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함
- (개인사업자)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

### ※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

- 영업신고증(또는 영업등록증)에 변경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

## 3 지원내용

### ○ 지원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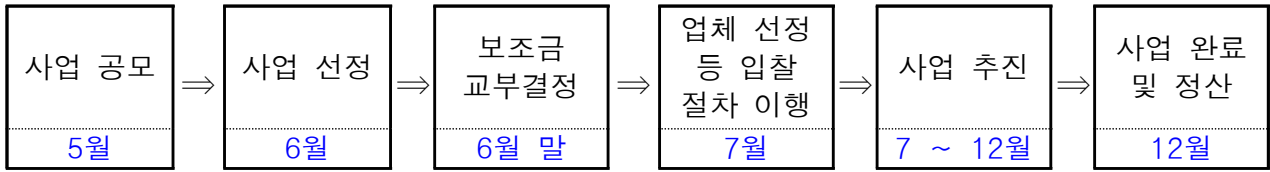
- [법인] 100백만원(보조 60, 자부담 40) 이내
- [개인사업자] 50백만원(보조 30, 자부담 20) 이내

### ○ 지원내용

- 신규 가공 장비 구입 설치 및 기존 노후장비 교체 지원
  - \* 건축물 신축·개보수 비용과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지원불가
-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설치 지원
  - 공조기, 환기시설, 에어커튼 등 작업장 청정도 관리 설비
  -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검출장비
  -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
- \*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 4

## 사업추진단계



### ○ 신청접수

- 신청/접수기간 : 2023. 5. 3.(수) ~ 5. 19.(금)
- 접수방법 : 도 식품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(문의☎ 710-3173)

### ○ 사업선정

- 운영실적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

### ※ 평가항목

- 운영기간, 매출액, 도내농산물 가공실적, 자기자본금, 수상 및 특허보유, 수출실적, 보조금 지원이력 등

### ○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

- GAP 인증관리시설을 갖춘 업체, 6차산업(예비)인증사업자,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업체

### ○ 선정 심사

- 자체 심사 :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: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

\* 불임 심사표에 의거 심사 후 총점 50점 미만은 지원 제외

### ○ 보조금 교부결정

-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
-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,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

### ※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함

-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
-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

\* 단,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(질병, 징집,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자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)는 제외

- 입찰 및 계약추진
  -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 원칙
- 완료보고서 제출
  - 물품 구입 후, 빠른 시일 내 사업완료보고서 식품산업과로 제출
  - \*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감독(준공) 공무원 현장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
-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

## 5 정산 및 사후관리

- 정산보고
  - 사업완료(준공)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(정산보고서 포함) 제출
  -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- 사후관리
  - 사용승인일 기준 5년 적용
  -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시
  - \*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해서는 안 됨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■ 주요 기계·장비	구입일	5년간	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

\*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·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



**붙임1**

**2023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선정 심사표**

○ 보조사업자 :

심사항목		배점	기준	점수
운영 실적 (60점)	- 가공사업자 운영기간	20	5년이상(20), 5년미만~3년이상(15), 3년미만~1년이상(10)	
	- 전년도 매출액	20	2억이상(20), 2억미만~1억이상(15), 1억미만(10)	
	- 전년도 도내 농산물 가공실적	20	50%이상(20), 50%미만~20%이상(15), 20%미만(10)	
발전 가능성 (30점)	- 건전한 재무구조 * (법인) 자기자본금(자산-부채) * (개인사업자) 매출액	20	1억이상(20), 1억미만~5천만이상(15), 5천만 미만(10)	
	- 업체 수상경력 및 특허 보유	10	2회 이상(10), 1회(5), 해당없음(0)	
기타 (10점)	-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(농업분야) 5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보조 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	5	해당(5), 해당없음(0)	
	- 업체 수출 실적	5	있음(5), 해당없음(0)	
<b>합 계</b>		<b>100</b>	<b>기본점수 계</b>	
※ 가점부여				
① GAP인증 ② 6차산업(예비)인증자 ⑤ 친환경인증 획득 업체			각 항목별 해당시(2)	
<b>총 점</b>			<b>총점(기본점수+가점)</b>	
평가의견				

심사자 :

성명 :

인(서명)

## 붙임2

# 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서류 체크리스트

○ 보조사업자 :

심 사 항 목		농업 법인	일반 법인	개인 사업자	비고	
기본 요건	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 * 증빙 가능한 실적이 있을 것					
	설립일 기준 1년 이상 * (법인) 등기부등본, (개인) 사업자등록증 기준					
	최근3년 동일사업 미수혜					
	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완납					
	법인	출자금 1억원이상, 자본금 80억원 이하				
		중소기업으로 도내 본점 소재지 등록				
	유연법인	공통	법인농업경영체등록			
구성원		(영농법인) 농업인 5인 이상				
	(회사법인) 1/10 이상 농업인 출자					
개인	부가가치세 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 가능업체					
공통 서류	1	지원신청서(서식1) 및 교부신청서(서식2)				
	2	사업계획서(서식3)				
	3	지원계획서(서식4)				
	4	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(서식5)				
	5	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			서식 참고	
	6	사업자등록증				
	7	영업등록증(영업신고증)				
	8	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				
	9	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 (금액, 제품설명서 포함, 2개업체(*국내업체) 이상)				
	10	인감증명서				
	11	지방세완납증명서				
	12	기타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				
	13	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* 사후관리기간(기계구입일로부터 5년) 이상				해당시
법인 사업자 공통	14	보조사업 신청 공문				
	15	단체소개서(서식6)				
	16	구성원현황(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) (서식7)				
	17	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회의록 * 반드시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들어갈 것				
농업법인	18	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법인, 농업인) 각 1부				
추가제출	19	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및 해당 농업인 확인서류 각 1부 * 농업회사법인에 한함			해당시	

※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하며, 음영 부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제출



#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

## ▶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

- **물품 및 용역 구매,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**
  -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(지방계약법 제8조)
    - \* 종합공사 2억원 이하, 전문공사 1억원 이하,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
    - \*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
  
- **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\*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(보조금법 제34조)**
  -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**직접 계좌이체** 또는 **보조사업비 카드(신용카드)사용**만을 인정
    -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, 세금계산서, 전자세금계산서, 지로,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
  - 사업자금 집행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**사업자등록을 마친 자** (이하 '사업자')와 거래
  -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 포함)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,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    - 다만,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,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
  
- **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**
  
- **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,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(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)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(정산보고서 포함)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(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)**
  -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    - \*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, 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서를 포함하여 제출

# ○○○법인

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식품산업과장)

(경유)

제목 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

-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0000-00호와 관련입니다.
- 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1부. 끝.

○○○법인 대표 ○○○(인)

담당자 ? 대표 ○○○

협 조 자

시 행 회 사 - 01호 (2023. . .) 접 수

우편번호 주 소 회사주소

전화번호 전송번호 / e-mail



##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###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### 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1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(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4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【서식 2】

##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1. 보조사업명 :

2. 보조사업 신청자

○ 명 칭(성 명) :

○ 소재지(주 소) :

○ 전 화 번 호 :

3.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

○

○

4. 보조사업 소요경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	보조금	자부담	기타

5. 보조사업 기간(착수 예정일 ~ 완료 예정일)

6. 기타사항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붙 임 : 사업계획서 1부

2023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자(기관명 및 대표자) :

(직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【서식 3】 사업계획서

**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계획서**

사업개요

○ 사업명 : 000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내용 :

신청자의 자산총액 :      천원(자산액      천원, 부채액      천원)

경비총액 :      천원(보조율      %)

보조금액 :      천원

자부담액 :     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고

보조사업의 효과

○

○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(예시)가공설비	자산취득비	6,000	10,000*60%
위생설비	자산취득비	12,000	20,000*40%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(예시)가공설비	자산취득비	4,000	10,000*40%
위생설비	자산취득비	8,000	20,000*40%

※ 항목(품목)별 보조금, 자부담 몰아넣기 금지 ☞ 비율대로 넣을 것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홍보비, 인쇄비, 강사료, 교통비, 식비, 임차료 등으로 구분
- ③ 금 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- 세목 기재방법 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 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□ 업체현황

업체명		대표자	
설립년월일		종업원수(명)	
주생산품		연간생산량	
매출액(최근 1년)		수출액(최근1년)	
주거래처			
주요시설	자가공장( ), 임대공장( ), 등록( ), 무등록( )		
	공장부지	㎡ ( 평)	
	공장건물	㎡ ( 평)	
경영상황 (2021년)	자본금	백만원	
	총자산	백만원	
	매출액	백만원	
	순이익	백만원	
	종업원수	명(상시 , 일용직 )	
지적재산권	* 특허,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		
품질인증	* 품질인증,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		

□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

○ 원료 원산지 비율(3개년)

연도	국내산		수입산(%)	합계
	지역내 생산(%)	지역외생산(%)		
2022				100%
2021				100%
2020				100%

○ 현재 원료 조달현황(2022년)

원료명	연간소요량(톤)	조달방법(구입처)	구입액(백만원)	참여농가(호)
계				

※ 조달방법 : 직접생산, 계약재배, 산지구입, 도소매시장, 기타

○ 향후 원료 조달계획(설치후 1개년)

원료명	연간소요량(톤)	조달방법(구입처)	구입액(백만원)	참여농가(호)
계				

#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) >

####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부터 제40조)

**제37조(벌칙)**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*제38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**제39조(벌칙)**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**제40조(양벌규정)**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 . . .

	단체명	대표		(서명)
단체명	보조금 책임관리자	직책	성명	(서명)
단체명	보조금 실무책임자	직책	성명	(서명)

【서식 4】

# 단체 소개서

[ 단체명 : ]

주소 및 연락처	주소	(우 123-456)		
	연락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화 :</li> <li>• 팩스 :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홈페이지 :</li> <li>• E-Mail :</li> </ul>	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록일	
	대표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무국 직원수 : 명</li> <li>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)</li> </ul>
	회원수			
설립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</li> <li>※ 첨부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</li> </ul>			
단체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81.11. 8 ○○○○ 설립(창립)</li> <li>• '88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</li> <li>• '99. 7.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</li> </ul>			
예산현황 (당해년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총액 :     천원(보조금 :     천원, 자체수입 :     천원)</li> <li>•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   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   %)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(   %), 사업수익(   %), 기타(   %)</li> </ul>			
주요사업 (최근1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“정관/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”</li> <li>• 2~3건 작성</li> <li>• 별지작성 가능</li> </ul>			
주요사업 계 획 (당해년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~3건 작성</li> <li>• 별지작성 가능</li> <li>•</li> </ul>			

[별지]

## 가공시설 및 주요가공제품 사진대지

※ 기존 가공공장 및 설비 사진 및 주요가공제품 사진 첨부

<p>가공공장 전경</p>	<p>가공공장 내부 설비</p>
<p>주요 출시 상품(1)</p>	<p>주요 출시 상품(2)</p>



【서식 6】

## 구성원 현황

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 소	출자액 (백만원)	농업인여부 (해당란 체크)	연락처
대표	김가공	60. 1. 1.	제주시 한림읍 00로 0	10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000-0000-0000
이사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감사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
계						

※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,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/10이상 증빙하여야 함

붙임 농업인 증빙서류(농업경영체확인서 등)

보조사업자(기관명 및 대표자) : \_\_\_\_\_ (인)

【참고 1】

## 자가생산 증명서(2022년도)

생산자	업체명	
	대표자 성명	(인)

작물명	재배지 주소	재배 기간 (00년00월~00년00월)	수량 (Kg)	비고

※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


## 【참고 2】

#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

농산물의 매수인(수급자)\_\_\_\_\_ 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와(과) 매도인(공급자)\_\_\_\_\_ (이하 “공급자”라 한다)은(는)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작물재배)

작물명 (품목)	재배지 주소	재배 면적 (m <sup>2</sup> )	계약 물량 (kg)	계약액 (원)

- “공급자”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“수급자”에게 매도하고 “수급자”는 이를 매수한다.
-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, 농기구 등 구입은 “수급자”와 “공급자”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### 제2조(규격 및 단가)

-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,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품목	품종	규격	수매 단가 (원/kg)	포장 단위

-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, 규격 등을 감안,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3조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부터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까지 유효하며 “수급자”와 “공급자”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4조(계약금 및 대금지급)

- 계약금은 상호 협의 하에 “수급자”가 “공급자”에게 지급한다.
-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\_\_\_\_\_ 30 \_\_\_\_\_일 이내 “수급자”는 “공급자”에게 지급한다.





【서식】

## 사 용 인 감 계

사용인감	법인인감

위 인감은 본인(법인)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겠으며,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(법인)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.

(보조사업명 : )

20 . . .

주소 :

상호 :

대표 : (인)

제주특별자치도 귀하